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11. 30.(월) 총 14매(본문5, 참고9)	
담당 부서	모빌리티 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박준상, 사무관 홍예표, 주무관 이수용 • ☎ (044)201-3820, 3821	
보 도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30.(월) 15:00 이후 보도 가능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 닥트웨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쌍쌍) (이상 업체명(서비스명))

○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6.9 공포, 12.10 시행 예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 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 자전거도로 통행, 이용연령완화(만16→만13세), 안전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부재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 >

- 11월 30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시기인 12월 10일에 맞추어 시행된다.

① 공유PM의 대여연령을 제한한다.

-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②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를 확립한다.

-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공유PM 업체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

*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

③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 카드뉴스·웹툰 등 홍보물을 제작, 유튜브·SNS 등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홍보 등을 진행하며, PM 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등을 통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부·경찰청 등이 협조하여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한다.**

④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 *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하며,
 - 대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완화한다.
- 또한,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 개인형 이동수단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이날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안전교육·캠페인, 보험, 제도분과로 운영되며,
 - 각 분과에서 개최(수시)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열리는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조정·의결한다.
- 교육·캠페인 분과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수칙 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캠페인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 보험분과는 공유PM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내용·범위 등을 결정하여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의 개발 등과 관련된 보험제도를 마련하며,
 - 제도분과는 대여연령과 주행속도 등을 논의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정 제한수준을 결정하고, 바퀴크기 등 장치의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마련한다.
 -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수렴 등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15개 공유PM 업체(이하 협약기관) 간의 협약도 진행되었다.
 - 협약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여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협약기관은 이날 안전관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캠페인 실시, 이용연령 및 주행속도 등의 적절한 수준 논의, 주·정차 질서 확립, 합리적인 보험제도 방안 논의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 향후 협의체에서 제도개선 등 논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모빌리티정책과 홍예표 사무관(☎ 044-201-38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담당자	연락처
국토부	홍예표 사무관	044-201-3820
교육부	김운후 사무관	044-203-6356
행안부	홍경주 사무관	044-205-3535
경찰청	김주곤 경정	02-3150-215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체 업무협약서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여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력사항]

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협력한다.

- ① 협약기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수칙 홍보,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하고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 ② 협약기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연령, 운행속도 관리 등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협약기관은 업계와 지자체 등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8차 해커톤 등에서 합의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운행·주차 제한구역 지정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④ 협약기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보험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제 3 조 [협의체 구성·운영]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4 조 [협의조정]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효력발생 및 기간]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협약의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6 조 [기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각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11. 30.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백승근

 교육부
국장 이승복

 행정안전부
국장 이승우

 경찰청
국장 유진규

DART
대표 김태현

SWING
대표 김형산

deer
대표 팽동은

 Lime
지사장 권호경

MMS
대표 정수영

mate.
mercane
대표 민경균

MOCEAN
대표 김성철

 beam
사장 강희수

HIKICK
대표 최유진

KICKGOING
대표 최영우

WIND
지사장 박화중

 이브이패스
대표 현승보

G.BIKE
대표 윤종수

FLYING
대표 김동환

 **FLYING**
대표 윤문진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원장 박선영

 KoROAD
도로교통공단
교육이사 김만배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최윤석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관리 강화방안

2020. 11. 30.

관계부처 합동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관리 강화방안

□ 그간 경과 및 추진배경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면허의무 폐지 등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12.10 시행)
 - 그간,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발표(8.20,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하였으며,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9.17, 홍기원의원)되어 국회 심사도 진행 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PM 관련 사고 증가*와 함께 PM 안전에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 ('17) 117건 → ('18) 225건 → ('19) 447건 → ('20.10) 688건(경찰청 통계)
 - ** 특히, ①면허 폐지로 만13세 이상 탑승, ②도로 상 무분별한 PM 방치, ③2인 탑승·보호장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주로 지적
- ⇒ 기존 방안의 후속조치로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마련이 필요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도로교통법 시행(12.10)에 맞추어 단기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

1. 단기적 관리방안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① 대여연령 제한 등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 (대여연령 제한) 공유PM 대여연령에 대해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만18세 미만의 경우는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 * '20.10 기준, (만16세) 2,216/480,152명(0.5%), (만17세) 4,642/488,970명(0.9%)

- (약관시정) 국내외 공유PM 업체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여 사업자의 사고발생 책임강화(5개 업체 약관시정 지시, 11.17/공정위)
 - * ▲사업자 책임 부당면제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 제한 ▲유료결제 포인트 환불제한 ▲무료쿠폰 임의 회수소멸 ▲회원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제공 등
- (민·관 협력) PM법 시행까지의 법·제도 공백을 메우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 * ①안전교육·캠페인, ②보험제도, ③제도개선(속도, 이용연령, 주정차 등) 3개분과로 운영하고, 공동 캠페인·교육 등을 통해 안전이용문화 확산에 주력

②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

- (인도 등에 PM방치 근절) 거치제한구역(지하철역·건물 입구, 횡단보도 앞 등) 지정을 통해 도로 상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PM 집중관리
 - 지자체·PM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해커톤, 10.28)을 전국으로 확대·보급 → PM 주정차 질서 확립
 - *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
- (계도·단속) 음주운전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는 즉시 단속하고,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은 경고하는 등 단속·계도 강화(경찰청)
 - 특히 PM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외근 활동 중 PM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 시 경고·계도활동 반드시 시행

< 단계별 단속·계도 항목 >

- (즉시단속)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상위차로 통행
- (경고·계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어린이 사용, ▲자전거도로 미통행
-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 후 경과를 살펴 향후 단속 검토

- (장치안전 확보) 국내에 수입·제작·판매되는 전동킥보드 장치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교통안전공단)하여 공지
 - 안전 확인을 받은 PM에 한하여 12.10일부터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

③ 교육·홍보 통한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 (교육)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2주간(20.12.3.~12.17.)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 강조하는 계기교육 실시(교육부)

〈 PM 관련 계기교육 학습자료 예시 〉

	<p>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수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 보호대 등)를 착용한 후 탈 것 ▶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 젖어 있거나 편평하지 않은 표면에서는 타지 말 것 ▶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	---

-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관내 경찰서 협조)

- 교통안전교육에 PM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특히 수능 수험생 대상으로 PM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수능 이후)

* 2인탑승 금지, 인도주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음주운행 금지 등

- (홍보) 관계기관 홈페이지, SNS 홍보 및 생활주변 매체 활용한 현장 캠페인 실시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에 현수막 설치 등

- 카드뉴스·웹툰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수칙 합동홍보 방안 논의하고,

- PM 안전 홍보영상 제작(경찰청·국토부)하여 TV 등 송출(20.12)

2.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① 속도하향 논의 등 안전성 강화

- (주행안전) 주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PM의 최고속도 하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검토 (예시: 최대 25→ 20km/h)

- (장치안전) 장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바퀴크기 등의 안전기준 개선을 검토*하고(예시: 8 → 10인치) 필요시 대여사업자에 우선 적용
 - * 바퀴 크기가 클수록 주행의 안정감 상승 및 위험인식 정도가 낮아짐
- (불법개조처벌) PM법 시행 후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PM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PM을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② 이용자 보호

- (보험) PM 대여사업자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화*된 보험 상품을 마련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강화
 - * 향후 민관 협의체에서 보장내용·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 등을 논의
 - 개인이 가입 가능한 상품의 부재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 및 지자체에 가입 독려
 - * 자전거 보험의 사례와 같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구(시)민들이 사고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대여표준약관) 사고보상 규정, 고객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하여 공유PM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 완화

③ PM 이용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개선

- (도로정비) 자전거도로에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 검토 및 안전표지 확충하고, 노후화된 안전표지 및 미설치 노선에 대해 집중 관리(행안부)
 - * 자전거보행자비분리겸용도로의 노면표시 부재, 겸용도로 진출입구간 등에 안전표지 부족으로 자전거등 이용 시 혼란
- (설계기준) PM의 제원을 고려한 설계기준안* 마련 후 PM 특성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 정비 및 주행안전성 확보
 - * PM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중심 설계도로 기준안 제정 중('20.12, 국토부)

□ 향후계획

- 협의체 운영 및 교육·홍보 캠페인 등 실시('20.12~)
- 협의체 논의 통해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 발굴·시행

참고 3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해커톤, 4차산업위, 10.27~28)

□ 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주·정차 가이드라인

- 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②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③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④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⑤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⑥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⑦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⑧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⑨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⑩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⑪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⑫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⑬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

		
1.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3.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5.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6. 차도
		
7.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	9.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11. 계단, 난간	12. 터널 안, 다리 위
		
		13. 통행제한 구간



전동 킥보드의 모든 것.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기

전동 킥보드 2명 이상 탑승해도 된다?

X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차 정원이 한 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모든 것.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기

주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자전거도로 없을 경우)

현재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2020. 12. 10 시행)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운행 가능하며,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인도 주행을 금지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모든 것.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기

안전모와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반드시 안전모·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주세요.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주변을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급출발·급제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요. 운행할 때에는 규정 내 안전 속도로 주행하여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전동 킥보드의 모든 것.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기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운행은 금지!

2020년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동차(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모든 것.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기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 필수!

- 브레이크·핸들·E-키어 공기압·배터리 등 체크
- 충격 또는 과 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에 주의

안전한 주행 습관과 충분한 연습 필수!

- 방향전환·가속·감속 등 갑작스러운 작동 조심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 끌고 횡단
-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 켜고 주행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 주행 자제
- 주행 중 휴대폰·휴대전화 사용금지
- 미연도로·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감속

습기로운 전동 킥보드 상행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 문화 만들어요!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관리하게!